

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서울)서울으뜸신용협동조합

2. 조치일 : 2026. 5. 26.

3. 조치내용

대상	내용
기관	경영유의사항 3건

4. 조치대상사실

가. 경영유의사항

(1) 연체채권 관리 강화

서울으뜸신용협동조합(이하 '서울으뜸신협')의 2024년말 기준 연체율*은 9.74%, 고정이하 여신비율**은 20.44%로써 연체채권 313억원 및 고정이하여신 355억원 증가, 총여신액 637억원 감소 등으로 인해 2023년말 대비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크게 악화되었으며, 전체 신용협동조합 평균 연체율 6.02% 및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 7.08%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.

* 연체율(%) : (2022년말) 5.70 → (2023년말) 4.22 → (2024년말) 9.74

** 고정이하여신비율(%) : (2022년말) 6.25 → (2023년말) 13.30 → (2024년말) 20.44

<조치할 사항>

서울으뜸신협은 연체여신 증가 등 건전성 지표 악화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보유중인 고정이하여신에 대해서는 신속한 상·매각, 담보물 경공매 실시 등 채권회수 노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.

(2) 채무조정심의회 운영의 합리성 및 실효성 제고

내규 「(조합)여신업무방법서」 제V편 제8장 제5절 제3조 제3항 및 제6절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프리워크아웃 또는 워크아웃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대출에

대하여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을 유예하거나 프리워크아웃 또는 워크아웃 이전에 발생한 이자의 일부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.

하지만 서울으뜸신협은 내부 채무조정심의회는 2024.3.28. 및 2024.3.29.에 A사 등 6개 차주의 대출실행 이후 채무조정 신청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상환한 이자 일부가 아닌 미상환한 이자 전액의 상환유예를 승인하였다.

<조치할 사항>

서울으뜸신협은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시 채무조정 신청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전액 상환유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채무조정심의회 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내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3) 부동산개발관련대출 사업성 평가 실시 및 부실 사업장 관리 강화

내규 「(조합)여신업무방법서」 제Ⅲ편 제7장 제2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중앙회가 별도로 지정한 협약대출(동반성장대출)* 외에는 매분기별로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의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여야 한다.

* 중앙회가 지정한 1개 동반조합과 1개 성장조합이 협약에 의해 취급한 대출(동반조합 및 성장 조합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)

그러나, 서울으뜸신협은 차주 B주택조합(검사기준일 현재 대출잔액 39억원)에 대한 부동산대출 관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, 사업성 평가 대리금융회사인 C사가 2024년 중 동 조합을 포함한 대주단에 사업성 평가결과가 '유의'에 해당함을 두 차례 이상 공유*하였음에도 자산건전성을 '정상'으로 높게 분류하였다.

* 2024년 7월 및 2024년 12월 대주단 단체채팅방을 통해 사업성 평가결과를 공유

<조치할 사항>

서울으뜸신협은 내규에 따라 부동산개발관련대출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을 적립하는 한편, 부실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개발 관련대출 사업성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기적(예 : 분기별)으로 점검·관리하시기 바랍니다.